제2024-1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응 시 안 내

2024. 2.

면허시험관리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목 차>

1. 일반사항 ····· 1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1

3. 시험시간표 및 합격기준 ····· 2

4.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및 제출서류 ····· 3

5. 응시원서 접수 ····· 4

6. 응시자격 등 ····· 5

7. 합격자발표 및 응시자격 서류 등 제출 ····· 10

8. 면허증 발급 ····· 10

9. 응시자 유의사항 ····· 11

<시험응시 관련 주요내용 요약>

1. 시험일정 등

o 원서접수 : '24.2.12.(월) 09:00 ~ '24.2.16.(금) 18:00

- 홈페이지(http://license.kins.re.kr) 상단「원서접수」탭에서 신청

▸ 기본 정보입력, 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15,000원)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 응시표 출력가능 기간 : 2024.3.18.(월) ~ 시험당일(3.31.(일)) 오전

o 시험일 : '24.3.31.(일)

o 시험장소 : 대전 소재 대학교

- '24.3.18.(월) 이후 홈페이지에 응시자별 시험장 및 수험번호 게시 예정

o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24.5.2.(목)

o 응시자격 심사·신원조회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별도 안내 예정)

o 면허증 교부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별도 안내, 7월 중순 발급 예정)

2. 응시자격 등 : 5p 이후 내용 참조

3. 응시자 유의사항

o 시험장 입실시간 : 시험당일(3.31,일) 12시 ~ 14시(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o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계산기, 청색이나 흑색 볼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함

-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 안 됨(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인정. 11p 참조)

o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폰, 스마트 워치 등) 사용불가. 소지 시 반드시 전원 off

o 계산기는 기억장치 초기화 후 사용(미 이행시 부정행위로 간주됨)

o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 내 착용 정부지침 준수

o 응시표 등에 시험문제를 적어 나가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됨

o 시험문제는 홀수형과 짝수형 두 종류이므로 본인의 유형에 정확히 마킹

o 답안카드는 낙서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감독으로부터 재교부 받아 작성

o 답안카드 내 시험감독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처리(재교부 받은 경우에도 날인 필)

★ 세부 응시안내서를 면밀히 확인 및 준비하시어 불이익 등이 없도록 바라며, 문의사항은 가급적 홈페이지 질의응답 코너(우측하단)를 이용 바랍니다.

1 일반사항

1. 시험일정

원서접수 (인터넷)	시험 시행일	이의신청 (인터넷)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응시자격 서류접수	면허증 발급 예정일
'24.2.12.(월) 09:00 ~ '24.2.16.(금) 18:00	'24.3.31.(일)	'24.4.1.(월) ~ '24.4.5.(금)	'24.5.2.(목)	'24.5.7.(화) ~ '24.5.17.(금)	'24.7.13.(금)

※ 기 면허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이 취소됨(개별통보 예정)
※ 면허증 발급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시험장소 : 대전 소재 대학교

○ 개인별 수험번호 및 시험장소는 2024.3.18.(월) 이후 '원자력관계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icense.kins.re.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임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1 원자력관계법령 - 법 및 방사선장해방어 관계법령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제·개정본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3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4 원자력기초이론	o 필기시험 o 객관식 - 4지 택일형 - 각 과목당 20문제

3 시험시간표 및 합격기준

1.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비고
응 시 안 내	14:00 ~ 14:20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입실 시간 : 12시~14시
제 1 교시	14:30 ~ 15:30 (60분)	o 원자력관계법령 o 방사선취급기술기초	
휴 식	15:30 ~ 16:00 (30분)	휴식시간	
제 2 교시	16:00 ~ 17:00 (60분)	o 방사선장해방어기초 o 원자력기초이론	

※ 일부 시험 과목명은 편의상 축약하여 표기함

2. 합격결정 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4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및 제출서류

1. 면제유형 및 제출서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일부과목 면제
1) 면제유형 o 외국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의한 면허와 동등 이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 『원자력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 2) 제출서류 o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증 사본 1부(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면허로써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필한 경우에 한함)

※ 일부 시험과목 면제 신청 전 필히 시험 담당자(아래 연락처 참조)와 사전협의 요망

2. 제출기간 : 2024.2.12.(월) 09:00 ~ 2.16.(금) 18:00

3.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우편접수 모두 원서접수 마감(2024.2.16.(금) 18:00)까지 제출
- 우편으로 해당 면허증 원본을 송부할 경우 반송용 봉투 및 우표 동봉 요망

4. 제출처

○ (우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면허시험관리실 RI 일반면허 담당자(042-603-3046)

5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4.2.12.(월) 09:00 ~ 2.16.(금) 18:00

○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응시번호와 시험장소는 2024.3.18.(월) 이후 홈페이지(http://license.kins.re.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응시표 출력가능 기간 : 2024.3.18.(월) ~ 시험당일(3.31.(일)) 오전

2.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license.kins.re.kr)「원서접수」탭에서 신청

- 시험정보, 응시자 정보, 학력 및 경력사항 입력, 사진 업로드
  - ▸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입력(기재 오류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응시원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를 맞추어 그림파일(JPG 또는 GIF 파일)로 첨부
  - ▸ 타인의 사진 첨부, 저화질 등 응시자 본인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특별히 유의

○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는 면제서류 사전 제출 후 인터넷 접수 바람(담당자와 사전협의)

3.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1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 방식(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4. 수수료 환불

○ 대상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및 기간 내(원서접수 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등(환불신청 기간 : 2.13(월) ~ 2.26.(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license.kins.re.kr)「원서접수」-「응시취소/환불신청」탭에서 신청

※ 환불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응시취소/환불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5. 응시표 출력

○ 원서접수 이후 바로 응시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환불처리 등이 종료된 후 응시번호가 부여됨.

- 3.18.(월) 이후 응시표 출력이 가능

6 응시자격 등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1. 이공계 대학원 또는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자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서(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위와 동등 학력자도 가능),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별표 4※의 4개 경력인정 분야(원자력이론,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장해방어, 원자력관계법령)에 대하여 각각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별표 4 : 8페이지 참조 ② 원자력공학(원자핵공학), 방사선학 또는 원안위가 인정한 유사학과※를 전공한 사람 ※ 원안위가 인정하는 원자력(핵)공학과 유사학과 : 7페이지 참조 2. 이공계 대학원 또는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자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위와 동등 학력자도 가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①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실무 : 법적 개인선량계(TLD 등) 착용기간.(문의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31) 626-3903) ②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단, 실무경력과 교육기간은 중복인정 안됨)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 한국방사선진흥협회(기존 한국동위원소협회 포함)나 한국방사선안전협회(구 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 외국에서 위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3. 고등학교 졸업자(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위와 동등 학력자도 가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①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단, 실무경력과 교육기간은 중복인정 안됨)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 한국방사선진흥협회(기존 한국동위원소협회 포함)나 한국방사선안전협회(구 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 외국에서 위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4.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1. 경력의 내용

○ 경력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지 않음

○ 경력기간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24.2.16.(금))까지만 인정됨.(학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경력의 내용	환산율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1항, 제54조 및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이 보고된 경력 2. 1997.6.30. 당시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 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0%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1년 이상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투과검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에만 적용한다.)	80%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 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 피폭선량의 월별선량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	50%

2. 면허취득의 결격사유(원자력안전법 제85조)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원자력 • 방사선학과 유사학과

1) KAIST : 원자력 및 양자공학
2) KINGS : 원자력산업학과
3) UNIST : 원자력공학과
4) POSTECH : 첨단원자력공학부
5) 경일대학교 :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6) 단국대학교 : 원자력융합공학과
7) 동국대학교 :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18학번까지만 인정)
8) 부산대학교 : 기계공학부 원자력시스템전공
9) 영남대학교 : 원자력공학(연계전공)
10) 위덕대학교 : 에너지전기공학부
11) 인제대학교 : 원자력응용공학부
12) 중앙대학교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13) 제주대학교 : 에너지공학
14) 고려대학교 :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5) 전북대학교 : 양자시스템공학과

4. 이공계의 범위(대학설립 • 운영규정 별표 1)

구분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이공계열	자연과학계열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의학계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기타계열	인문・사회계열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 자연과학, 공학 및 의학계열만 이공계열로 인정됨

5. 주요기관 연락처

○ (교육 관련)
- 한국원자력교육센터 : 042) 866-6761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 02) 3490-7114
- 한국방사선안전협회 : 02) 554-7330

○ (피폭경력 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031) 626-3903

○ (진단용 피폭경력 확인) 질병관리청 : 043) 719-7518

6. 경력인정 대상 관련 과목(원안위 고시 제2019-13호 별표 4)

(별표 3의 면허종류별 3 및 5의 경력인정대상자 관련)

경력인정 분야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
1. 원자력 이론	원자력개론, 원자력기초이론(학), 방사화학, 핵공학(개론, 설계, 응용), 원자력공학, 핵주기공학, 원자력과 환경, 원자력이론, 방사성동위원소 총론, 원자 및 핵물리, 원자력입문, 핵의학물리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응용생명과학개론, 방사선응용물리, 의용방사선물리학, 방사선약물동태학, (의용)방사선생물학, 비파괴총론, 의학물리학, 방사선물리학, 방사선물리학 및 실습, 방사선학(개론), 방사선학(개론) 및 실습, 방사선과학(개론), 방사화학 및 방사선의약분석, 방사화학 및 방사성의약품학, 방사선의약화학, 현대물리(학), 원자로시스템설계, 원자로안전(해석), 원자로해석 및 핵설계, 원자력안전분석, 원자로물리, 원전안전성구조, 원자로안전공학, 고급핵물리, 핵물리(학), 원자로이론, 원자력안전공학, 방사선(학)개론, (응용)핵물리(학), 원자로공학, 방사선(개론) 및 실습, 핵공학개론, 응용핵물리, 원자력공학(개론), 에너지공학(개론), 핵공학응용, 핵공학설계, 방사선의학물리(개론), 방사선(물질) 상호작용, 방사성의약품개발론, 원자력폐기물공학, 분할조사연구
2. 방사선 취급기술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취급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험), 방사선계측(학)실습, 방사선계측(학)실험, 방사선계측학 및 실습, 방사선계측실험 및 설계, 방사선량계측, 방사선계측학, 방사선계측이론, 방사선계측(기)학, 방사선계측, 방사선계측기술, 방사선계측학실습, 원자력계측제어 및 실험, 방사선민감제 연구, 근접치료법연구, 방사선치료(학), 방사선치료 및 핵의학 임상실습, 방사선치료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치료(학)실습, 방사선치료계획,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기술학, 비파괴검사, 방사선종양학(실습), 방사선종양학과 임상실습, 방사선차폐설계,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성)동위원소이용, 비파괴이용, 방사선(응용)공학, 방사선의 산업 및 의학응용, 방사선공학설계, 비파괴응용 및 실험, 핵의공학, 방사선상호작용, 원자력폐기물 공학, 방사선안전평가, 방사선응용기술, 방사선영상, 영상정보학, 핵의학영상론, 방사선의약품개발론, 양전자방출체약제학, 원자력의학, 방사선기기실험, 방사선이용, 치료방사선학, 임상치료방사선학, 방사선치료학, 방사선치료선량학, 방사선기기관리공학, 방사선물리학 실습(험), 센서계측공학, 방사선계측설계, 방사선장치설계, 핵공학기초실험, 방사선계측시스템, 방사선량계측, 방사선계측학, 방사선물리 및 선량학, 고급방사선계측이론, 방사선안전 및 관리학, 방사선(치료)임상실습, 방사성동위원소이용암치료론, 방사선치료(학) 실습, 방사선기기관리학 실험, 방사선관리, 방사선치료학,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 기술학 실습, 방사선치료 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 방사선치료(임상)실습, 방사선기기(학)실습, 방사선공학, 비파괴응용 및 실험, 핵의공학, 원자력의학과, 방사선차폐
3. 방사선 장해방어	방사선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총론, 방사선장해방어(학), 보건물리, 보건물리 및 실험, 방사선방어공학, 방사선방어, 현대보건물리, 보건물리(학),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장해방어 및 관리, 방사선방호 및 보건물리, 방사선보건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실습, 방사선과 환경, 방사선환경 및 실험, 방사선량과 생물학적 영향, 방사선안전관리와 방사능방제, 방사선안전분석, 원자력환경공학, 의용방사선방어학
4. 원자력 관계법령	원자력법령(법규), 원자력관계법령(법규),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 법규), 방사선방호관계법령, 방사선관계법규, 원자력(시설)안전규제

※ 원자력관련 교육훈련기관(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고등교육법상 교과과정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및 상기 이외 과목의 인정여부는 관련법령과 면허시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

※ 상기과목명에 “개론, 총론, 특론, 각론”, “기초, 초급, 중급, 고급”, “Ⅰ,Ⅱ,Ⅲ” 등이 표기된 과목도 각각 경력인정대상관련 과목으로 인정

7. 사례별 ‘적합한 응시자격’ 예시

1) 이공계 대학(원)•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원자력(핵)공학, 방사선학 또는 원안위가 인정하는 유사학과 전공자
② 학과명에 ‘원자력(핵)’, ‘방사선’ 명칭이 포함된 학과 전공자
③ 원자력(핵)공학 또는 방사선학을 2년 이상 ※복수전공(제2전공)하여 졸업한 경우 (졸업 시 학위가 나옴)
※ 부전공한 경우는 인정 안됨(졸업 시 학위가 나오지 않음)

2) 이공계 대학(원)•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3호에 따른 12학점 이상 이수자

3) 이공계 대학(원)•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방사선피폭경력 1년 이상인 자(원자력안전재단 관리)
② 중단 없이 연속된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이 2년 이상인 자(질병관리청 관리)

4) 이공계 대학(원)•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원자력연구원 4주 이상 교육 이수자
② 방사선진흥협회 또는 방사선안전협회(구 원자력안전아카데미) 9개월 이상 통신 교육 이수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방사선피폭경력 1년 이상인 자(원자력안전재단 관리)
② 중단 없이 연속된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이 2년 이상인 자(질병관리청 관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원자력연구원 4주 이상 교육 이수자
② 방사선진흥협회 또는 방사선안전협회(구 원자력안전아카데미) 9개월 이상 통신 교육 이수자

7) 인문, 사회계열 등 이공계열 이외의 대학 졸업자•재학생 또는 고교 졸업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방사선피폭경력 2년 이상인 자(원자력안전재단 관리)
② 중단 없이 연속된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이 4년 이상인 자(질병관리청 관리)

8) 인문, 사회계열 등 이공계 이외의 대학 졸업자•재학생 또는 고교 졸업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① 방사선피폭경력 1년 이상 또는 중단 없이 연속된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 위 관련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단, 경력과 교육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기간은 응시자격 인정 기간에서 제외됨)

응시자격은 학력(또는 국가기술자격증)과 경력(또는 관련 교육)으로 구성되며, 반드시 학력 또는 국가자격증 취득 이후의 시점부터 경력이 인정되니 본인의 응시자격을 잘 확인하시어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발표 및 응시자격 서류 등 제출

1.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2024.5.2.(목)

○ 발표방법

- 홈페이지(http://license.kins.re.kr) 공지사항에 게시

2. 응시자격 서류 등 제출

○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개별통보 예정)

○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양식은 홈페이지(http://license.kins.re.kr)「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증명서
- 경력증명서
- 교육수료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사진 1매(수첩형 희망자) :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상반신, 모자 ×

※ 응시자격 심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됨

3. 제출기간

○ 2024.5.7.(월) ~ 5.17.(금)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가급적 등기우편(또는 택배)으로 제출 요망

5. 제출처

○ (우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면허시험관리실
RI 일반면허 담당자(042-603-3046)

8 면허증 발급

1. 발급대상자 : 최종합격자(응시자격 심사 및 신원조회 통과자)

2. 발급방법 : 추후 안내

9 응시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1.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계산기, 청색이나 흑색 볼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2. 시험장 입실 시간 : 2024.3.31.(일) 12시~14시까지(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 불가)
3. 시험 당일 신분증 미 지참 시 시험에 응시 불가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 2020.12.21. 이후 발급된 신규여권의 경우 여권정보 증명서를 필히 지참)
   (※※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 및 저장한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4. 응시표 재발급 : 미 지참 및 분실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5. 시험당일 본인의 신분증과 응시표 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시험본부로 즉시 알려야 합니다.
6. 시험 답안카드 정답 마킹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시험 중에는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off 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스마트 워치, PDA(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휴대용 컴퓨터 및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MP3(음성파일 변환기),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등)
8. 시험시작 후 20분이 경과하면 퇴실할 수 있습니다. 퇴실 시 반드시 문제지와 답안카드를 함께 제출하고 퇴실하여야 합니다.
9. 계산기는 기억장치를 초기화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화하지 않고 응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10. 아래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마스크는 시험장 내에서는 착용하여야 하며, 시험 중 신분확인 시에는 잠시 내려서 협조합니다.(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 마스크 착용 정부지침 준수)
    ○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이상 등의 증상이 심각한 경우 시험본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장 주차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현금결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음)
12. 시험장 내 기기 및 집기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개인 변상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및 벌칙

원자력안전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응시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 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 시험문제를 응시표 등에 적어 나가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의 답을 엿보거나 답안을 가르쳐 주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가르쳐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5.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6. 시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시험장 내 기물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7. 시험종료 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8. 시험감독위원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9.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장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등

답안카드 작성

다음의 답안카드 작성방법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1. 답안카드의 좌측 상단에 있는 성명, 문제지 유형, 응시번호 란은 응시자가 직접 적는 부분이며 청색, 흑색 볼펜이나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 바랍니다.(연필 또는 적색 등 다른 색의 필기도구 사용 시 0점 처리될 수 있음)
2. 응시번호와 답안 마킹 란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여백없이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문제는 홀수형 및 짝수형의 두 종류입니다.
   답안카드에 자신의 유형을 잘못 마킹하면 다른 유형으로 채점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안 마킹은 해당번호 위에 여백없이 정확히 마킹하세요. 채점기가 답안번호의 모든 마킹을 정답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5. 답안카드는 수정액 등으로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답안카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답안카드를 재교부 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6. 답안 카드에는 낙서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답안카드에 이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감독위원의 날인이 없는 답안카드는 무효처리 됩니다.